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397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0. 4. 1.
4. 회부일자 : 2020. 4. 6.

II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III . 주요내용

1. 취득: 9건
 - o 신설: 1건
 - 목 적
 - 단설유치원 미 설립 자치구에 단설유치원 우선 설립
 - 지자체 협업을 통한 공립유치원 확충으로 유아공공성 강화 및 학

부모 만족도 제고

- 대상교: (가칭)서울신길유치원

○ 증축: 2건

- 목 적: 학생수련체험활동 지원

· 학생교육원 본원: 우리교육청 관외(경기 가평군 등)에 위치하고 있어 급식실 및 식당증축과 연계하여 직원숙소 등 수련지원시설 확충 필요

· 학생교육원 대성리교육원: 연30,000명이상의 서울특별시 관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장에 다양한 수련체험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상기관: 학생교육원(본원, 대성리교육원)

○ 증축: 6건

- 목 적: 학생배치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증축

- 대상교: 윤중초(변경), 당서초, 월계초(변경), 선린초(변경), 가양초, 서원초(변경)

2. 취득 및 처분: 1건

○ 개축: 1건

- 목 적

· 취득: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1~4단지) 재건축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

· 처분: 서울개원초등학교 개축을 위한 토지 무상귀속 및 건물 멸실 처분

- 대상교: 개원초

3. 관리계획 취소: 1건

- 목 적: 2019년 제6회 자체투자심사 결과 부적정으로 사업 취소

- 대상교: (가칭)윤중유치원

I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계획안은 2020년 4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397호로 제출되어 2020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신설 1건, 산하기관 증축 2건, 교실, 급식실 및 학생식당 그리고 체육관 등 증축 6건, 학교개축 1건, 취소 1건 등 총 11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취소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신설의 건 (가칭)신길유치원)

- 가칭)서울신길유치원(이하 ‘신길유치원’) 신설의 건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취학수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영등포구 신길동 339-30일대에 10학급(특수 2학급 포함) 178명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현재 신길유치원이 위치할 남부 8권역은 유아수용계획상 유치원의 유아수용률이 57.6%에 불과하며, 더욱이 공립유치원의 유아수용률은 10.3%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 또한 해당권역은 단설유치원 없이 병설유치원만 5개원이 운영되고 있는바, 2019년 개원한 우신초병설유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원의 충원률은 평균 92.4%로 높은 편입니다.
- 따라서 동 지역에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공·사립 유치원 간

수용여건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유아들에게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려 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신길유치원이 위치할 신길동 339-30일대는 신길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해당 조합이 동 부지를 영등포구에 사회복지시설로 기부채납 하였으며, 부지 중 일부를 무상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구청장이 협약을 맺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¹⁾.
- 이를 위해 지난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구유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동의하였으며(영등포구 총무과-7832),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자체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도 모두 이행된 상태입니다.
- 따라서 신길유치원의 신설은 유치원의 정원을 확충하여 유아 공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설립 측면과 이를 위한 절차적 측면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1] 남부 8권역 내 유아수용전망

(단위 : 명, %)

구분	취학권역	취원대상 유아수 ①	유치원 정원 ^② (유아수용률)			취학수요 ^③			과부족 ^④ = ^② - ^③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신길유	남부8	3,257	336 (10.3)	1,541 (47.3)	1,877 (57.6)	2,237	356	2,493	△1,901	1,185	△716

나. 증축의 건

1) 학생교육원 본원 식당 및 숙소 증축

1)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설립을 위한 영등포구청과 양해각서 체결 계획(학교지원과-8999,2019.6.25.)
 - 영등포구 구유지 무상사용 승인 허가
 - 유치원 건물 부담비 및 재산권 설정(시설비 교육청 부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주체는 교육감)

- 학생교육원 본원 식당 및 숙소 증축의 건은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학생교육원 내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증축을 진행 중이던 식당동 상부에 숙소를 2개층 20실 규모로 수직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현재 학생교육원 본원의 숙소 이용 필요인원은 48명임에 반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는 교육동과 지원동 등을 합쳐 총 11실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현업 및 교대근무자 29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9명은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상황입니다²⁾.
- 이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현장방문시(2019.4.)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방안 및 직원 숙소동의 신축 추진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학생교육원 본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퇴근 부담 및 비용 문제, 사고 위험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서울관외 인사발령으로 인한 직원들의 인사 기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건의 설립취지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게 되는 관사의 경우 해당 재산(행정 재산)에 대한 관리 규정이 별도로 없는바³⁾,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 규정의 제정 등 조속한 법률적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직원 숙소의 규모가 당초 학생교육원이 검토한 1실당 면적 및 규모보다 축소되었는바⁴⁾, 숙소의 위치 및 규모가 직원들의 근무여

2) 2019.1월 부터 한시적으로 일부 장거리 출·퇴근 직원들을 위해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의 숙소 10실(1~2인 1실)을 주중에만 사용하고 있음.

3)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관사관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장 관사관리(제48조~제59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조례의 일부개정(제5942호, 2015.7.30.)으로 준용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관사 관리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이 없음.

4) '학생교육원 본원 직원숙소동(관사) 신축사업 기본계획(안)', 학생교육원 운영지원과-1176(2019.6.10.)
- 1인 1실(25실), 1실당 면적 24㎡(7평) → 1인 1실(20실), 1실당 면적 17.22㎡~18.04㎡(5평)

건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학생교육원 대성리교육원 수련활동체험 실내교육장 증축

- 학생교육원 실내교육장 증축의 건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학생교육원 대성리교육원의 미래관 옆 부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목적 수련활동을 위한 지상2층의 실내교육장을 별도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현재 대성리교육원은 연간 3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양한 수련체험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천 및 미세먼지 등의 기후환경에서 실내 활동이 가능한 공간은 생활관으로 사용되는 미래관의 5층에 위치한 다목적실 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공간이 협소하고 천정 높이가 낮아 학생들의 체험 활동시 안전사고의 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한 실내 체험활동 공간의 제공과 학생들의 만족도 제고 등의 측면에서 동 건의 증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 증축부지가 현재 토지지목이 답⁵⁾으로 되어 있어 실내교육장의 건축을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전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등 증축의 건

- 당서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특별교실 증축의 건은 학생들의

5)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261-5, 261-6필지

실내 체육활동을 위한 환경 제공과 교실배식에 따른 위생 안전문제 및 과밀 학급으로 인한 특별교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가양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의 건 역시 특별교실을 제외한 위생적인 급식제공과 학생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당서초와 가양초 모두 체육관과 급식실 증축순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당서초는 2019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14억원을 교부⁶⁾받았고 가양초는 서울시로부터 전입금 25억원을 교부⁷⁾받았는바, 외부재원 확보로 인한 사업추진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당서초의 경우 가양초와 달리 특별교실 증축이 동 증축의 건에 포함된 것은 당서초의 경우 학급수(49학급) 대비 특별교실(4실)이 부족하여 체육관 증축시 2~3층에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체재정투자심사 및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된 것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및 교수학습 공간을 제공할 필요성과 사전적인 절차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623,(2019.3.25.) '2019년도 제1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통지(서울)'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사업명	요구액	금회 교부액	20년분할	검토의견
당서초	당서초 강당 겸 체육관 증축	2,000	1,400	600	○ 요구액 반영

7) '2020년 비강남권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 추진계획 알림',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14993(2019.12.26.)

학교명	사업추진년도		사업기간	체육관규모	서울시예산 (백만원)
	당초	변경			
가양초	2021	2020	'20.3~'22.3	810m ²	2,500

4) 증축 변경의 건

[표-2] 관리계획 변경의 건

학교명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 초 (의결일)	1차 변경 (의결일)	2차 변경
윤중초	체육관 (2018.4.)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월계초	체육관 (2017.12.)	급식실, 학생식당 및 체육관 (2018.4.)	체육관, 급식실, 학생식당 유치원, 지하주차장
선린초	체육관 (2010.10.)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서원초	교실(9실) (2018.12.)	교실(12실)	

- 동 관리계획안에 제출된 윤중초, 월계초, 선린초, 서원초 등 총 4건의 증축 변경의 건은 이미 의결 받은 기존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먼저 ‘윤중초’와 ‘선린초’는 종전 체육관 증축으로 동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승인받은 체육관 증축 계획을 변경하여 급식실과 학생식당을 추가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은 노후화된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증축함에 있어 노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⁸⁾.
 - 다만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은 체육관 증축사업과 병행 추진되거나, 기존 체육관 1층 필로티 공간을 급식실 및 학생식당으로 전환할 경우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왔습니다.
 - 따라서 윤중초와 선린초는 아직 급식실 증축 우선순위가 도래하지

8) ‘2016학년도 학교급식시설 표준 관리체계 신설(안)’, 체육건강과-2548(2016.2.26.)

않았으나 체육관 증축과 함께 1층 필로티를 활용하여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우선순위 절차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윤중초 및 선린초 모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재정투자심사를 받았고 모두 조건부 가결되었는바,

이에 따라 윤중초는 체육관 및 급식실의 면적을 축소하고 증축 위치를 조정하였고, 선린초는 기존시설을 다목적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재정투자심사의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절차적 측면에서도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3] 재정투자심사 결과 내역

학교명	사업비 (억원)	자체재정투자심사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	비고	
윤중초	104.7	조건부가결 (2019.11.8)	-체육관 및 급식시설 기준 면적에 비해 과다하여 조정 및 증축위치 검토 -병설유치원 설치 검토	가결 (2019.12.19)
선린초	77.9	조건부가결 (2019.9.18.)	-기존시설 활용방안 수립 후 추진	

- 참고로 윤중초 체육관 증축위치는 지난 제280회 임시회(2018.4.)에서 특별교실동 상부에 체육관⁹⁾을 수직 증축하는 것으로 동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나, 학교측은 체육관의 지역주민 개방시 학생 안전 우려 및 공사진행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체육관을 별도 증축할 것을 요청하였고(윤중초-4739),

이후 진행된 증축위치에 대한 연구용역¹⁰⁾ 결과 운동장 남북방향으

9) 윤중초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공모사업(주민개방원칙)에 신청 및 선정됨(문체부 체육진흥과-1297,2018.4.4.)

10) ‘윤중초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 배치계획 연구용역’,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18-100089(2018.10.15.)

로 다목적 체육관을 배치하고 이에 인접하여 동쪽에 유치원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측과 증축협의 과정에서 증축위치를 기존 특별교실동 상부에서 운동장 내로 변경하였습니다.

- 따라서 윤중초 체육관 증축 위치의 변경은 학교내에서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11)의 위치변경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위치가 정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 지역주민에게 개방시 접근성이 다소 불리할 수는 있으나 상기한 증축 위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인바, 위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림] 윤중초 연구용역 체육관 배치도



11)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③<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다음으로 월계초 증축 변경의 건은 최초 ‘체육관 증축’에서 ‘급식실과 학생식당’을 1층 필로티를 활용하여 병행·증축하는 것으로 동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추진되었으나, 공립유치원에 대한 취학수요 충족을 위한 유치원 신설의 필요성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동 관리계획안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월계초가 위치하고 있는 노원구 월계2동은 북부9권역으로 공립의 유아수용률이 8.2%에 불과하여 유아수용여건의 개선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 기존에 증축이 추진 중인 체육관 및 급식실동 1층을 활용하여 3학급 45명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추가 증축하는 것은 유아의 공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4] 북부 9권역 내 유아수용전망

(단위 : 명, %)

구분	취학권역	취원대상 유아수 ①	유치원 정원 ^㉔ (유아수용률)			취학수요 ^㉕			과부족 ^㉖ = ^㉗ - ^㉘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월계초병설	북부9	2,154	176 (8.2)	1,188 (55.2)	1,364 (63.3)	1,452	268	1,720	△1,276	920	△356

- 다음으로 서원초 일반교실 증축 변경의 건은 지난 제284회 정례회 (2018.12.)에서 일반교실 9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학생수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종전 9실에 일반교실 3실을 추가하여 총 12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현재 서원초가 위치하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삼호가든맨션3차의 경우 2021년 5월에 입주예정입니다.

- 최초 해당 재건축조합은 분양 확정 전 재건축에 따른 증가 학생의 배치를 위해 서원초에 일반 교실 9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사증축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 확정 후 학생수가 더욱 증가하여 서원초의 과밀학급이 예상됨에 따라 조합은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실 12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면적을 변경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¹²⁾.
- 따라서 이와 같은 교실증축은 급당 인원 감소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여건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재건축조합의 기부채납 물량 확대에 증축에 대한 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개원초 개축의 건

- 개원초 개축의 건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사업에 따른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나, 개원초의 기존 시설만으로는 증가하는 학생의 배치가 불가함에 따라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개원초를 40학급 1,175명 규모로 개축하려는 것입니다.
- 현재 개원초(휴교중)는 개포주공 1,2단지를 통학구역으로 하고 있으나, 개포주공 1,2단지의 재건축 사업 이후 추정 학생은 2,353명으로 예상되는바, 기존의 개원초 시설을 사용할 경우 인근 학교로의 분산 배치가 용이하지 않아 과대·과밀학급이 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생수 증가에 따른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이미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제287회 정례회(2019.6.)에서 ‘개원2초 신설’의 건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12)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교육청 협의 및 협약서 체결 내역’,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2019.10.2.)

- 따라서 동 지역의 재건축에 따른 증가 학생을 학교 개축을 통해 수용토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5] 개포지구 재건축 추진 현황 일부

학교명	개교시기	완성기준(2022년)							입주계획				
		학생수 (일반)	학급수			급 인원	당 원	전 날 교 용 실	개발 사업명	세대수	학생수	분양 공고일	입주 예정일
			일반	특수	유치원								
개원초	2023.3	1,175	40	1	5	46	29.4	3실	개포주공 1단지	6,642	1,684	2016.8.31. (조합원분양)	2023.3
									개포주공 2단지	1,957	669	2016.3.24	2019.2 준공
									계	8,599	2,353		

다. 취소의 건(윤중유지원)

- 가칭)윤중유지원(이하 ‘윤중유’) 신설 취소의 건은 지난 제277회 정례회(2017.12.)에서 승인된 단설유치원인 윤중유의 신설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윤중유는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6학급(특수1학급 포함) 규모의 단설유치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아공교육 기회의 확대 및 기존 병설유치원 교실을 초등학교 교실로 전환함으로써 윤중초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추진되었습니다.
- 그러나 윤중유 신설을 위한 설계용역 결과 사업비가 당초 36억에서 18억이 추가된 54억¹³⁾으로 증가되면서 자체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었고, 심사결과 윤중유 신설이 윤중초 체육관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신설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재검토 판단을 받았으며, 이

13) ‘서울윤중초 내 단설유치원 신설사업 부족예산 요청((가칭)윤중유지원), 서울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7270(2019.9.5.)

후 재심사시 부적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 반면 윤중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에 대한 자체재정투자 심사시 병설유치원의 설치를 검토하라는 조건으로 가결되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윤중유 신설을 취소하고 윤중유 체육관 및 급식실 준공시 기존 조리실 등을 활용하여 현재 운영중인 윤중유병설유치원의 학급증설을 통해 유아 공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윤중유 신설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판단을 받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이유로 동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6] 자체재정투자 심사 결과 내역

학교명	심사일	심사결과	심사의견
윤중유	'19.9.18.	재검토	-현재 동시에 추진 중인 다목적 체육관과 함께 검토 필요 -위치 부적정
	'19.11.8.	부적정	-

학교명	자체재정투자심사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	비고	
윤중초	조건부가결 (2019.11.8)	-체육관 및 급식시설 기준 면적에 비해 과다하여 조정 및 증축위치 검토 -병설유치원 설치 검토	가결 (2019.12.19)

○ 그러나 윤중유가 속해있는 남부7권역은 공립의 유아수용률이 6.6%에 불과하여 여전히 유아수용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앞선 연구결과¹⁴⁾에서도 윤중초내 단설유치원과 체육관을 동시에 증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4) '윤중초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 배치계획 연구용역',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18-100089(2018.10.15.)

더욱이 서울시교육청 및 자체재정투자심사에서는 단설유치원 신설 취소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여 유치원 신설을 취소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단설 유치원 취소로 인한 지역민원 발생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는바, 해당 신설 취소의 건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7] 남부 7권역 내 유아수용전망

(단위 : 명, %)

취학 권역	취원대상 유아수 ㉠	유치원 정원㉡ (유아수용률)			취학수요㉢			과부족 ㉣=㉡-㉢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남부7	5,231	346 (6.6)	1,716 (32.8)	2,062 (39.4)	3,372	942	4,314	△3,026	774	△2,252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3호, 2020. 3. 31., 일부개정]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